2025년 2월 7일부터

"프로포폴" 자가 처방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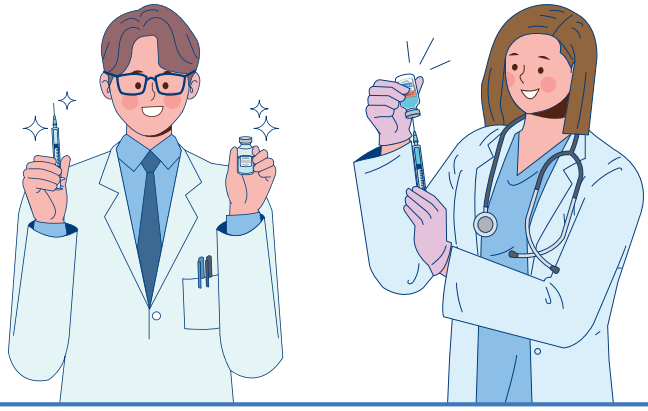

의사,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, 투약할 수 없습니다

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*관련 법률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제61조제1항제11호

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 1670 - 6721

식품의약품안전처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